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보 성 군 의 회 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조문 번호 등 인용 조항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의원의 겸직 신고 시 사용하는 업태 분류를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의 표준 분류 체계에 맞춰 세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서식 중 분야 수정 (안 별지 제1호서식)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 체계를 준용.
- 별지 제1호서식 중 인용 조문 수정 (안 별지 제1호서식)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개정)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 별지 제2호서식 중 인용 조문 수정 (안 별지 제2호서식)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개정)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예고 기간: 2026. 2. 12. ~ 2. 16.(5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6일까지 의견을 보성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061-850-5819)

- 규칙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보내실 곳: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의회 의회사무과 (우 59455)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와 별지 제2호서식을 아래와 같이 한다.

보성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겸직내용 중 분야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에서 “협회 및 단체[],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공공·국방·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기타[] ※국세청 발행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 참조 체크”로,

인용 조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로 한다.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인용 조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1호서식] (검직내용 중 분야) 농수산 <input type="checkbox"/>, 상공업 <input type="checkbox"/>, 건설업 <input type="checkbox"/>,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전문직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p> <p>(하단 인용 조문) <u>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u> 및 보성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 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직(변경) 사항 을 신고합니다.</p> <p>[별지 제2호서식] (하단 인용 조문) <u>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u> 및 보성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 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p>	<p>(검직내용 중 분야) <u>협회 및 단체[], 도매 및 소매업[],</u> <u>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u> <u>정보통신업[], 부동산업[], 공공·국</u> <u>방·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u> <u>건설업[], 기타[]</u></p> <p><u>※국세청 발행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u> <u>종류 참조 체크</u></p> <p>(하단 인용 조문) <u>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u> 및 --- ----- ----- ----- -----.</p> <p>(하단 인용 조문) <u>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u> 및 --- ----- ----- ----- -----.</p>

□ 「지방자치법」 제43조 겸직 등 금지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연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